

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

1 기본 현황

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		
사업비 (당해년도)	523,600천원	[국비]	[사비]523,6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[구비]	[기타]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행정국	자치행정과	강석 2133-5800	고성남 2133-5828	이현음 2133-5832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1예산액 (A)	2022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-) 526,400	(x-) 523,600	(x-) △2,800	(x-) △1
사회보장적수혜금	(x-) 526,400	(x-) 523,600	(x-) △2,800	(x-) △1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2년 예산내역		
사회보장적수혜금	○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100,000원*12개월*114명	=	136,800천원

과목구분	2022년 예산내역	
	○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지원 1,000,000원*1%*433명	= 4,000천원
	○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 명예 수당 지원 100,000원*12개월*319명	= 382,800천원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서울시에 거주 중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
-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

□ 사업근거

- 「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」 제5조, 제6조, 제7조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- 지원대상 : 서울시에 6개월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
 - 생활지원금 : 월 소득액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(세대)
 - 민주화운동명예수당 :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(시행일 : '21.7.1.자)
 - 장제비 :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관련자 사망시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
- 사업내용 : 생활지원금,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급

□ 추진경위

- 「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」 제정(2019. 7.18.)
- 「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」 개정(2020.12.31.)

□ 2022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523,600	

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	2022.01~2022.12	140,800	신청 접수, 거주 및 소득 확인, 지급
민주화운동명예수당	2022.01~2022.12	382,800	신청 접수, 거주 및 소득 확인, 지급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9년도	
2020년도	○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: 90명
2021년도	○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: 82명(2021.12월 기준) - '21.7월부터 시행된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로 '20년 대비 연말 대상자 감소 ○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 : 215명(2021.12월 기준)

□ 향후 기대효과

○ 서울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20	(x-) 78,000	(x-) 0	(x-) 0	(x-) 78,000	(x-) 52,300	(x-) 0	(x-) 25,700